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운영위원회안)

의안 번호	2022-129
----------	----------

제안일자: 2022. 11. 4.
제안자: 운영위원장

1. 의결주문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강서구청장이 제출함에 따라, 예산집행의 적정 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함.

3. 참고사항

- 「지방자치법」 제64조
-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설치목적

-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2023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 위원구성

- 위원회 정수는 9명으로 구성한다.

□ 위원선임

-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각각 호선한다.

□ 활동기간

- 활동기간은 제29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로 한다.

[관련 법령과 자치법규]

▣ 지방자치법

제64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관 의안(議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
2. 특정한 안건을 심사·처리하는 특별위원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 ① 각 상임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 또는 개선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제9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여러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설치목적, 위원구성, 활동기간, 활동내용, 소요경비 등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위원구성, 활동기간, 소요경비에 한정하여 변경 할 수 있다.

③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 종료 전 안건의 심사결과나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종료가 본회의 의결 전인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 때까지 특별위원회가 존속한 것으로 본다.

④ 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그 위원회의 존속기간으로 한다.

⑤ 특별위원회 위원 정수는 9명 이내로 한다.